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2. 12 선고 2022가단54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기

피고(선정당사자) 1. B

2. C

3. D

피 고 4. E

변 론 종 결 2024. 11. 21.

판 결 선 고 2024. 12.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들, 선정자들,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1971. 12. 20. 접수 제2189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피고 E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2. 5. 16. 접수 제273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1970년 무렵 원고는 익산시 F 전 3,616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G, H, I은 J 전 1,531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상태였다.

나. 1970. 12. 17.경 익산시 함열읍 일대에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되어 F 토지가 K, L, M, N, O 합계 약 1,010평으로(이하 'K 등 토지'라 한다), J 토지가 P, Q, R, S, T, U, V, W, X, Y, K, Z, AA, AB, AC 합계 약 3,28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환지가 완료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1/3)에 관하여 피고 E이 2012. 5. 1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H의 지분은 나머지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F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J 토지가 K 등 토지로 각 환지되었어야 하나,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한 농업진흥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의 착오로 F 토지가 K 등 토지로, J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각 환지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농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환지처분은 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에 대신하여 농지정리공사 완료 후에 새로

지번을 붙인 다른 토지를 지정하여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는 일종의 대물적 행정행위로서,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같은 법 제133조에 의한 환지등기가 없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 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 등 참조).

갑 제12호증을 비롯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토지가 K 등 토지로 환지되고 J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각 환지된 것이 농업진흥공사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농업진흥공사의 착오로 위와 같이 환지된 것이라 하더라도 환지계획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환지계획대로 원고는 K 등 토지의 소유권을, G, H, I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84다카1403 판결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1) 사실증명 등의 문제로 소유자를 오인하여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지를 한 경우에 대한 것이고(위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사안도 유사함),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다102462 판결은 중복등기된 토지의 환지에 대한 것으로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없다[피고 E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나, 자백이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참조), 환지처분의 효력은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에 해당하므로,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성구

별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토지의 매매·양도·교환·분합등의사유로 사실상의 소유권은 변동되었으나 소유권 변동에 관한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시장·군수의 사실증명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추정한다.